

- (다)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(다만, 말소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)
- (라)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(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,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이거나,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 포함)

바) 말소권자

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말소권자가 됨. 다만, 이 예규시행 이후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를 보관하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말소권자가 됨

3)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

가) 징계처분 기록

(1) 말소제한기간의 경과

(가) 단일처분의 경우

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기간(말소제한기간) 동안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, 강등은 9년, 정직은 7년, 감봉은 5년, 견책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함.

(예시1) 정직처분의 말소

- 2000. 5. 7. 정직1월 처분시 2000. 6. 7.부터 기산 7년 뒤인 2007. 6. 7. 말소

(예시2) 견책처분의 말소

- 2003. 2. 7. 견책 처분시 3년 뒤인 2006. 2. 7. 말소

(예시3)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휴직으로 정직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

- 2024. 7. 1. 휴직

- 2024. 12. 1. 정직3월 처분(집행 정지)

- 2025. 7. 1. 복직 및 정직3월 처분 집행

☞ 2025. 7. 1.부터 정직3월 처분 집행 시, 2025. 10. 1.부터 기산하여 7년 뒤인 2032. 10. 1. 말소

(나) 중복처분의 경우

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(처분기간+말소제한기간)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바, 선행 징계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·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.

(예시1)

- 2003. 11. 7. 정직3월 처분

- 2003. 12. 5. 견책처분

☞ 선행 징계처분일인 2003. 11. 7.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(3월+0월)과 말소제한기간(7년+3년)을 합산한 기간인 10년 3월이 경과한 2014. 2. 7.에 정직3월과 견책이 동시에 말소